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32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A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4. 1. 30. 접수 제22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C'을 운영하였는데, 2021. 2. 8.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2. 10.부터 2026. 2.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2. 10.부터 2026. 2.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약정 하에 D은행 E로부터 10,000,000원과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는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B의 보증인으로서 2023. 7. 27.경 D은행 E에 9,626,805원 및 19,253,610원 합계 28,880,415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 5. 27. 피고와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4. 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1/2)에 관하여 2024. 1. 3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B의 보증인으로서 2023. 7. 27.경 D은행 E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4. 1. 30.경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채무초과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F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그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28,880,415원의 구상금채무, G조합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 H조합에 대한 47,000,000원의 채무, I에 대한 12,191,000원의 채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10,000,000원의 채무,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75,262,000원의 채무 등 합계 203,333,41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B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소극재산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의 신용도,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할 상황이나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실행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의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재산에서 제외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1/2)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

별지